

<첨부>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

2006년 제44호

국무원의 행정심사비준개혁정신을 관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에 편이를 주기 위해 연구결과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 심사제도를 조정키로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입 식품·화장품 표시는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 및 강제기준의 규정(관련법령과 기준은 국가질검총국 사이트 “www.aqsiq.gov.cn/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식품화장품표지관리”에서 조회 가능)에 부합해야 하며, 수출 식품·화장품 표시는 반드시 수입국/지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2006년 4월 1일부터는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이 수출입 식품·화장품의 검사검역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각 수리기관은 더 이상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 사전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검사검역시 더이상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 심사증서》를 강제 징구하지 않는다.
3. 각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할 때 수출입 식품·화장품의 표시가 법률·법규·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품질 관련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한지 여부를 체크하여 합격하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문서에 “표시가 심사에 합격”을 추가 명시해야 한다.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수입되는 식품·화장품이 중국의 관련 법령과 강제기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감독하에 표시를 변경하여 규정에 부합하면 통관할 수 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식품·화장품이 중국의 관

런 법령과 강제기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 식품·화장품의 표시가 수입국/지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 제27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이미 취득한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 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다. 수출입 식품의 표시가 심사증서상의 내용과 일치할 경우 표시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예비포장식품 표시통칙》(GB7718-2004), 《중화인민공화국 예비포장 특수식품 표시통칙》(GB13432-2004) 등 새로운 기준이 식품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됨으로 하여 증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005년 12월 9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표시판공실의 《수입 식품표시 심사증서 심사재발급에 관한 통고》의 규정에 따라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신청 접수 마감일은 2006년 5월 1일이다. 이 날짜 이후에 법령 또는 기준중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증서는 자동 폐지된다.

5. 검사검역기관의 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에는 표시심사, 검사, 확인이 포함되며 검사검역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아야 하고 표시심사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한글>

국가질심중국

수출입식품표시판공실

수출입식품표시 심사증서 심사재발급에 관한 통고

2005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GB7718-2004), 《예비포장 특수식사용 식품 표시통칙》(GB13432-2004) 이 발효되었다. 새로운 기준이 원 기준 GB7718-1994, GB13432-1994에 비해 비교적 큰 변화가 있어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원 기준에 따라 심사발급한 증서가 新 기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新 기준의 요구에 따라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증서재발급범위

2005년 9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녹색바탕이 아니고 증서번호가 J로 시작되는 수입식품표시 심사증서는 전부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증서재발급 신청서류

- (1) 식품표시 심사증서 원본 1부
- (2) 경영판매회사 영업면허 사본 1부
- (3) 新기준의 요구에 맞는 표시견본 7부 및 원 표시의 번역본 2부. 표시견본에는 신청회사 날인이 있어야 하고 좌편 위쪽에 원 신청서 번호를 명기해야 함.
- (4) 사인과 날인이 있는 식품표시심사신청서 3부(별첨1)(신청서번호는 원 증서와 동일). 비고란에 “재발급” 명시.
- (5) 수정설명서1부. 新기준에 따라 원 표시를 수정할 경우 수정설명서(별첨2)에 상세하게 기입하고 수정내용을 명시해야 함.

3. 서류제출 및 증서 심사재발급

신청인은 다음 방식중 하나로 수입식품표시증서 심사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소지하고 현지 검사검역기관에서 수입식품표시 심사증서를 신청·재발급 받는다.
- (2)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질검총국 접수대청에서 수입식품표시 심사증서를 신청·재발급 받는다.

4. 재발급비용

증서재발급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5. 기한

재발급 신청접수기간은 오늘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이다. 2006년 6월 1일부터는 새 증서로 검사신청을 해야 하며 원 증서는 폐지된다. 원 표시가 기준에 심하게 어긋날 경우 각 검사검역기관은 수입식품 경영판매회사에 증서를 즉시 재발급 받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6. 新증서 수령

- (1) 신청인은 신청접수기관에서 新증서를 수령한다.
- (2) 증서 수령시 신청접수기관 날인이 있는 신청서 및 원 증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식품표시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의 관련법령과 기준의 갱신내용을 관심 있게 주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비 포장 음료주 표시통칙》(GB10344-2004)이 2006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신청인은 새로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표기·표시함으로써 증서의 재차 재발급을 피면할 것을 건의한다.

별첨1: 수출입식품표시 심사신청서

별첨2: 식품표시증서 심사재발급 표시수정설명서

총국 수출입식품표시판공실

2005년 12월 9일